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상욱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2년 3월 7일
- 회부일자 : 2022년 3월 10일

3. 제안사유

-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육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 정의, 적용대상 규정함. (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)
-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함. (안 제4조)
-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5조)
-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,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시를 규정함. (안 제6조)
-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,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. (안 제8조)
-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9조)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덕항)

가. 제출배경

-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으며, 보육교직원의 노동조건과 처우는 보육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.
 - 한국보육진흥원의 보육교사 권익보호 인식조사 결과(2020)¹⁾에 따르면, 보육교사의 68.3%가 어린이집에서 권익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고, 이들 중 상당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참거나,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는 등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.

- 교육부 소속 교원들(유치원 포함)의 경우,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제정을 통해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, 시도 교육청은 교원치유센터를 지정해 교원 심리상담·치료, 법률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, 보육교직원의 경우 이러한 지원이 미흡함.
 - 또한, 2021년 수립한 제4차 충청북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(2022~2026)에도 본 조례 제정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.²⁾

- 보육교직원이 전문가로서 직업의식을 가지고 보육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보육의 질 향상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육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함.

1) 한국보육진흥원(2020), “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방안 모색” 토론회 자료집, p.17~18.

2) 제4차 충청북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(2022~2026) p.310

-주요내용: 「충청북도 보육교직원의 지위 향상 및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」를 제정하여 보육교직원이 안심하고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,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, 적용대상,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.
 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조에서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,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” 고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의무화 하고 있고, 보육교직원의 범위도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것으로 본 조항들은 별다른 문제가 없음.

□ 영유아보육법

제2조(정의) 5. “보육교직원”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,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,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·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.

제4조(책임)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,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- 안 제5조에서는,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을,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, 이는 도 담당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, 계획의 중복수립을 방지함.
 - 현재 충청북도 중장기 보육발전 계획(2022~2026)이 수립(계획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 관련 사업내용이 일부 포함됨) 되어 시행 중에 있으므로, 본 조례안에 규정된 사업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추가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.

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

제19조(보육계획의 내용, 수립 시기 및 절차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보육사업의 기본방향
2.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
3.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

4.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

5.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②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,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○ 안 제7조에서는,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자문과 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충청북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되, 「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」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유사 위원회의 기능 중복을 방지함.

○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,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고충 및 법률상담, 심리적 안정지원, 교육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및 해당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

- 시·군,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음.

다. 종합 검토의견

○ 보육 현장에서는 아직도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으며, 또한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은 결과적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, 영유아의 복지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○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법적·내용적으로 타당하며, 조례안 예고 및 집행부 협의를 거쳐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.